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83

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이헌승·서일준·김정재

조경태 · 서범수 · 이상휘

김기현 · 송석준 · 정성국

박덕흠 • 강선영 • 성일종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,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,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, 전문 도서관,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.

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·군·구가 담당하고 있지만, 등록 업무는 국립, 공립 및 사 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, 시·도 또는 시·도교육청, 시·군·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 임.

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·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 관 유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 본문 중 "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·도지사나 시·도교육감에게"를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할 시·도지사, 관할 시·도교육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한다)에게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국립 공공도서관(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): 문화체육관광부장관
- 2. 공립 공공도서관(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):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교육감
- 3. 국・공립 작은도서관: 시장・군수・구청장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6조(등록 등) ① 공공도서관을 제36조(등록 등) ① -----설립 · 운영하려는 자(이하 "설 립자"라 한다)는 그 설립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 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 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 -----다음 각 호의 구분에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, 공립 공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관할 공도서관은 관할 시 · 도지사나 시 · 도지사, 관할 시 · 도교육감 시 · 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 한다. 다만, 사립 공공도서관은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 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 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 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-----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 청장"이라 한다)에게 등록할 -----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 있다. <신 설> 1. 국립 공공도서관(작은도서관 은 제외한다):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2. 공립 공공도서관(작은도서관 <신 설> 은 제외한다): 관할 시·도지 사 또는 시 · 도교육감

<u> <신 설></u>	3. 국·공립 작은도서관: 시장
	<u>• 군수 • 구청장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